

'96 하반기 나프타제조용 원유할당관세 추천요령

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6-82호('96. 7. 1)에 의거 나프타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6년 7월 1일
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장

제1 조 (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) 나프타제조에 소요되는 원유로 1996년 7월 1일부터 1996년 12 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4천 6백만배럴에 한한다.

제2 조 (추천대상자) 관세할당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나프타의 생산공급 실적이 있는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.

제3조(추천신청)

1.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 - 가. 관세할당추천신청서 1통
 - 나. 수입허가서 사본 1통
 - 다. 선하증권 사본 1통 또는 수입화물선취 보증서 사본 1통
 - 라.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
(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
 - 마.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
2. 전항의 관세할당추천 신청서 상의 수량단위는 “배럴”로 표시하여야 하며 팔호안에 “메트릭 톤”을 부기할 수 있다.

제4 조 (추천순서) 협회장은 관세할당추천에 있어 신청자의 수입신고순서(신청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제 3조 제 1항의 구비서류를 완비,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장이 이를 유효하게 접수한 순서)에 따라 추천한다. 단 '96년도 12 월의 관세할당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전월의 나프타공급실적 비율에 의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 조 (추천방법) 관세할당추천방법은 각사별로 제 6 조 1항의 원유량을 당월 해당사의 원유도입량에서 할당추천하되, 1개항차 원유도입량(통관 기준)에서 일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당 월에 원유도입량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익월 원유도입량에서 추천한다

제6 조 (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)

1. 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은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(배럴) X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 5-3-2조에 의한 기준소요량(산출 결과 소수점이하는 버린다)으로 한다.
2. 각사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 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,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은 제외한다. 단 사내판매는 석유화학부문에 순투입된 량을 기준으로 한다.

$$\text{대상나프타 공급물량} = \text{국내나프타 공급물량} - (\text{용제용나프타 공급물량} + \text{나프타수입물량})$$
3. 나프타의 수입물량(통관기준)은 수입된 당 월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사의

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차감하되, 수입물량이 공급물량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전량 공제될 때까지 익월 공급물량에서 계속 차감한다.

4. 수요처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단위는 리터(l)로 하며, 이를 모두 합산한 후 배럴(Bbl)로 환산하여 사용한다.(환산 계수는 158.984 l/Bbl로 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)
5. 행정상 쪽오 등으로 인하여 할당추천물량에 차이가 발생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익월 할당물량 추천시 정산 반영한다.

제 7조 (자료등의 제출) 추천신청자는 본 협회의 물량 대조 및 확인을 위해 매월의 나프타 공급증빙 자료(별점 1, 2)를 익월 20일한 본 협회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사내판매의 증빙을 위해서는 나프타부과금 환급을 위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해준 나프타사용확인서 및 그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처리기간) 협회장은 관세할당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관세할당추천서를 교부한다.

제 9 조(추천서 유효기간 등)

1.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서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.
2.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3. 협회장은 제 2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

되는 경우 제출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교부한다.

4. 추천서의 유효기간만료일(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만료일을 포함한다)은 적용기간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.

제 10 조(추천서의 분할)

1. 추천서를 교부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.
2.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3. 협회장은 제 2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 한다.

제 11 조(추천서의 반납) 관세할당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자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(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)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
2.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3.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경우

제 12 조(보고) 협회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각분기 종료후 10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- 부 칙 -

제 1 조(시행일) 이 요령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.